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순국선열유족회 설립 근거 마련〉

■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62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순국선열유족회 설립 근거 마련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용태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4. 10. 17.
3. 회부일 : 2024. 10.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애국지사, 그리고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순국선열로 구분하고 있음.

이러한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고 최고의 예우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순국선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공적 발굴이 어렵고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여 순국선열에 대한 공적 발굴과 연구를 진행하고, 순국선열의 정신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사업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조제10호 신설).

Ⅲ. 검토의견: 순국선열유족회 설립 근거 마련

-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0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u>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및 순국선열유족회를</u> ----- ----- ----- ----- ----- ----- ----- ----- ----- ----- -----.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함	제3조(회원) ----- -----

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 9. (생략) <u><신설></u>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순국선열유족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u>
---	---

- ☐ 현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구분되며, 현행법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법정 공법단체는 광복회가 유일함.¹⁾²⁾

□ 한편,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이하 “(사)순국선열유족회”라 함)는 현재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순국선열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여 순국선열의 유지를 계승하고 그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임.

○ (사)순국선열유족회는 1960년 당시 보건사회부 허가로 최초 법인 등록을 하였으나, 1961년 군사정부포고령에 따라 강제해산되었고, 1965년 광복회가 설립되어 이후 독립운동 분야는 광복회로 통합되었으며, 1981년 순국선열유족회가 복원되어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³⁾

□ 개정안은, 순국선열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순국선열유족회를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로 설립하려는 것으로, 순국선열의 희생정신 계승 및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4. 광복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3) (사)순국선열유족회 연혁 참조(<http://www.soongook.org/history.html>).

□ 다만, 현행법은 순국선열·애국지사 구분 없이 독립유공자의 유족을 회원으로 하는 광복회를 이 법에 따른 공법단체로 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신규 공법단체로 설립하려고 하는 순국선열유족회는 광복회와 설립 목적과 회원 범위에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광복회 이외에 추가로 공법단체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표 1] 광복회 및 (사)순국선열유족회 비교

구분	광복회	(사)순국선열유족회
단체 성격	공법단체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 (행정안전부 소관)
설립근거	국가유공자단체법	민법
설립목적	순국선열을 비롯한 독립유공자의 뜻을 받들어 민족정기 선양	순국선열의 뜻을 따라 그 정신을 널리 선양
설립일	1973. 3. 3.	1981. 6. 26.
조직현황	중앙회, 17개 지부, 136개 지회	지부, 지회 없음
회원 수	8,868명	95명
회원 범위	생존애국지사, 순국선열·애국지사 유족	순국선열 유족

[표 2] 독립유공자 및 유족 현황

구분		광복회 대상 회원	순국선열유족회 대상 회원
애국지사		4명	-
유족*	애국지사 유족	8,089명	-
	순국선열 유족	875명	875명

* 유족은 광복회 또는 개정안에 따른 순국선열유족회의 회원 범위에 해당하는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사람만 포함됨(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회원이 되는 선순위자 1명은 제외)

자료: 국가보훈부

- 그 밖에, 기존 단체의 회원을 분리하여 새로운 보훈단체를 설립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다른 단체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훈단체에 대한 현행 보훈체계와의 정합성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⁴⁾
- 국가보훈부는,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추가하는 것은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 강화와 이해관계 있는 다른 단체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광복회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함께 선양하는 것이 타당하고, 순국선열들은 광복회 창립 시 이미 광복회 회원에 포함되어 별도의 공법단체는 불필요하므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⁵⁾
- 그 외, 4·19민주혁명회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음.⁶⁾

문 의 처

02)6788-5112

4) 제22대 국회에서는,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의 회원인 6·25참전소년소녀병을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의 회원으로 하여 보훈단체를 신규 설립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안, 의안번호 2200492호)과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인 순직군경·공상군경의 유족을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의 회원으로 하여 보훈단체를 신규 설립하려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천하람·민병덕의원안, 의안번호 2204112호)이 각각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5) [참고 1] 개정안에 대한 광복회 의견(p.7)

6) [참고 2] 개정안에 대한 보훈단체 의견(p.8)

참고 1**개정안에 대한 광복회 의견**

구분	의견	사유
21대 국회	반대	○ 광복회 내 순국선열 유족의 분리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 ○ 순국선열 예우와 선양사업의 강화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을 개정해 개선하는 것이 필요 ○ 광복회 내 애국지사 계열과 순국선열 계열의 후손간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먼저 도출하고 개선책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함
22대 국회	반대	○ 독립유공자 본인들이 이미 거의 돌아가셔서 2세 기대가 되었으므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독립유공자로 함께 선양하는 것이 타당 - 독립유공자법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예우구분 철폐 필요 ○ 순국선열들이 광복회 창립 시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공법단체의 중복 불필요

자료: 국가보훈부

참고 2**개정안에 대한 그 외 보훈단체 의견**

단체명	의견	사유
4·19민주혁명회	반대	o 단체를 이원화 하는 것보다는 광복회에서 미흡한 예우를 강화
무공수훈자회	찬성	o 독립유공자와의 형평성과 순국선열의 예우를 고려하여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동의)
특수임무유공자회	찬성	o 애국지사는 그 공적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순국선열의 경우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예우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공적 발굴이 꾸준히 요구되는 만큼 향후 지속적인 순국선열의 업적을 발굴 계승하기 위해서 선열들의 후손으로 구성된 유족회를 설립하는데 찬성함
월남전참전자회	찬성	o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예우 강화를 위하여 단체설립이 필요할 것임

자료: 국가보훈부

